

(사)대한산란계협회	<b>보도자료</b>	변창하는 산란산업 활기찬 농장 만족하는 소비자
------------	-------------	---------------------------------

보도 시점 : 2026. 6. 17.

담당 부서	(사)대한산란계협회 사무국	책임자	회 장 안두영(010-3723-1332)
		담당자	전 무 김경두(010-3722-2822)

**"수급 관계없이 가격 내리라더니 담합조사?"**  
**계란 담합 사건, 물가관리용 표적조사 의혹**

농식품부 “수급과 무관하게 가격 인하” 요구  
 협회 거부 후 공정위 신고·담합조사 이어져 ...  
 생산자들 “투명한 가격정보 없애고 과거 불공정 거래 부활” 우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대한산란계협회(이하 ‘협회’)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부의 가격인하 요구를 거부한 직후 담합조사가 진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이 물가관리를 위한 표적조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공무원은 2025년 6월 11일 생산자단체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수급 상황과 관계없이 계란가격을 개당 10~20원 내리라“, “대통령실에 보고해야 하니 가격이랑 수급이랑 다 상관없이 메시지가 나가야 한다“, “필드에서 협회의 고시가격이 가장 낮은지 아는데 두들겨 맞기 전에 태풍은 피해야 한다”, “이것은 경제가 아닌 정치적인 이야기“라며 가격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치가 없으면 기재부가 담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당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과 각종 소모성 질병으로 공급이 감소한 상황에서 인위적인 가격 인하는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질병과 생산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손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 물가관리 성과를 우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후 6월 14일 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다음 날인 15일 기획재정부는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계란 담합조사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같은 날 공정위는 예고 없이 협회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서는 “가격인하 요구를 거부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신고와 담합조사가 이어졌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이번 사건이 갖는 근본적인 모순을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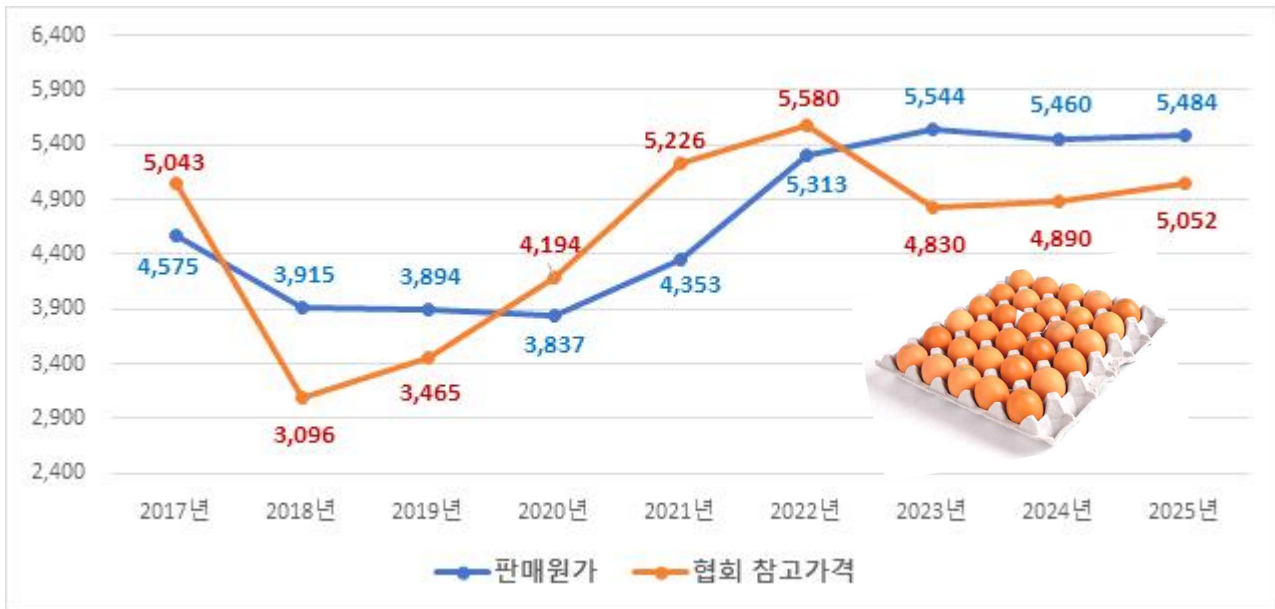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공개된 녹취록에서는 오히려 정부 측이 수급 상황과 관계없는 가격 인하를 요구했고, 협회는 시장 여건상 인위적인 가격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업계에서는 “인위적 가격 조정을 요구한 쪽은 정부였고, 협회는 시장 원리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는데 결과적으로 협회가 담합의 주체로 지목됐다”며 “이번 사건이 담합 적발이라기보다 정부가 물가관리 성과를 보여주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판단한 결정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지시에 순응한 Y협회는 대한산란계협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가격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정부는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업계는 또 협회가 제공한 가격정보의 성격에도 주목하고 있다.

협회가 제공한 가격정보는 3년(2023.1.~2025.5.) 평균 4,924원(특란, 30개)으로 판매원가인 5,496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마진율 : - 10.4%).



▲ 판매원가와 협회 제공 참고가격(특란, 수도권, 원/30개), 출처 : <판매원가>KOSIS, 축평원, <참고가>협회

생산자들은 “가격을 올리기 위한 담합이었다면 통상 판매원가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판매원가보다 낮은 가격정보 제공 행위를 가격 인상 담합으로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협회가 제공한 가격 정보는 거래를 강제하는 가격이 아니라 참고용 지표로 활용돼 왔으며, 생산자들은 이를 유통업체와의 가격 협상이나 노계 도태·병아리 입식 등 생산계획 수립의 기준으로 활용해 왔다.

생산자들은 이번 결정이 농가 문제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협회 가격정보는 생산자와 유통업체, 소매점이 시장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러한 정보 제공이 사라질 경우 거래가격의 투명성이 낮아지고 유통단계별 가격 형성과 마진 구조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격정보가 제공될 때는 생산자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어서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서로 견제할 수 있지만, 정보가 사라질 경우 유통단계의 가격 형성과 마진 구조를 외부에

서 점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가격을 올리기 위한 담합이 아니라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제공 활동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가격정보 제공 이후 유통단계의 과도한 마진과 일방적인 정산 관행(후장기 : 사후 판매대금 정산시에 임의적으로 일부 금액을 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는데, 이제 생산자를 보호하며, 폭리를 견제하던 보호장치가 사라지면 과거의 불공정 거래구조가 되살아날 수 있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가장 큰 수혜자는 일부 유통업체와 대형 유통채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은 “계란은 도매시장이나 공적 가격형성 체계가 없는 특수한 품목으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도 생산자단체나 전문기관이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 역시 수십 년간 생산자단체 가격정보를 가축살처분 보상금 산정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5-81호) 등 행정목적으로 활용해 왔으면서 이제와서 이를 담합으로 규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계란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것도 공급 감소 영향이 크지만, 일부 유통단계에서 이를 빌미로 과도한 가격 인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투명한 가격정보는 생산자 보호뿐 아니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시장 감시 기능에도 기여해 왔는데, 이번 조치는 이런 공익적 기능을 외면한 처분인 만큼, 해외 사례와 국내 거래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